

- 로 사용되는 권리(rights)
- 캐나다에 소재하는 부동산
- 유형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서 주로 캐나다에 있는 것
- 캐나다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수행되는 용역. 이 경우 용역의 공급이 다음 조건에 이루어지면 특정 HST 시행 주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 권리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그 시행 주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 등

4) 자동차의 판매

HST의 일반적인 공급지 원칙은 사업자 등록자에 의한 새차와 헌차의 매매시에도 적용된다. 자동차를 HST를 미시행 지역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7%의 재화용역세(GST)를 징수하며, 취득자가 이를 HST 시행지역으로 반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소에서 8%의 세율을 적용한 HST를 징수한다. 자동차를 외국에서 취득하여 HST 시행지역으로 반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GST(7%)를 징수하고 등록시에 HST(8%)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자동차를 HST 미시행 지역의 재화용역세(7%) 징수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HST 시행지역에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15%의 세율로 HST를 납부해야 한다.

5) 화물운송 서비스(freight transportation services)

화물운송의 목적지가 HST 시행지역이면 화물운송 서비스의 공급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목적지에서 HST를 납부해야 한다.

6) 원격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원격통신 서비스가 다음 조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HST 시행 주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 통신의 발신과 수신에 이루어지는 주 예를 들면, HST 시행 주내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그 통신이 타주에 있을지라도 시행 주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 HST를 징수한다.
- 통신의 발신과 수신에 HST 시행 주에서 이루어지고 요금이 그 주에서 부과되는 경우
- 통신의 발신과 수신, 요금을 부과하는 주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발신지 주를 공급지로 본다.

5. HST 시행 주에 반입되는 재산과 용역에 대한 과세

HST 시행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시행 지역에서 재화와 용역을 반입하여 시행지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